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6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박강산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봉양순, 아이수루,
,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영희, 윤종복, 이상욱,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전병주, 정준호,
한 · 신, 홍국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 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4조</u> (생 략)</p>	<p><u>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u> <u>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u> <u>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u> <u>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u> <u>를 구축할 수 있다.</u></p> <p><u>제15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p>